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20호 2017. 12. 11(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2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4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 7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0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08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1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60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보도진로 74-1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2. 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7-12-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652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 74-1 (가좌동)	20171211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무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무란 물이 빠질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무라는 뜻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33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 122 (원창동)	20171211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향을 지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8-7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798 (당하동)	20171211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59-7	인천광역시 서구 간재울길 30-1 (검암동)	20171211	옛 지명(자연부락)에서 유래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9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45 (왕길동)	2017121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98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46 (왕길동)	2017121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56-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7-11 (경서동)	20171211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2,6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8-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12 (경서동)	20171211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9-5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542번안길 6 (가정동)	20171211	염곡로54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00-2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542번길 22 (가정동)	20171211	염곡로 시작지점부터 5,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27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07번길 7 (원창동)	20171211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9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1번길 45 (석남동)	20171211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6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12 (경서동)	201712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67-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62번길 3-11 (경서동)	201712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62호

##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29호(2017. 3. 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 주차장, 사업명: 가좌동 556-35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가좌동 556-3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 3. 사업의 규모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2	주차장	서구 가좌동 556-36	696.8	2017.3.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스모화학(주) 함재경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가좌동	556-36	공장용지	696.8	696.8	코스모 화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2	주차장	서구 가좌동 556-36	696.8	2017.3.1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63호

##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주차장)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125호(2017. 9. 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주차장, 사업명: 종전대지(한국유리) 이용계획에 따른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8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종전대지(한국유리) 이용계획에 따른 주차장 조성공사

### 3. 사업의 규모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주차장	서구 가좌동 585-65	710	2017.9.2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토지산업개발 하영기
-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방축로 198(도화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가좌동	585-65	대	710	710	(주)토지 산업개발	인천광역시 남구 방축로 198(도화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주차장	서구 가좌동 585-65	710	2017.9.25.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64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우리 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가좌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준공인가)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의 완료를 고시합니다.

2017. 12.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좌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대
  - 나. 면 적 : 63,308.2m<sup>2</sup>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가좌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남인숙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고래울로 6,(가좌동)
4. 준공인가의 내역
  - 가.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나. 세 대 수 : 1,757세대
  - 다. 연 면 적 : 234,594.08m<sup>2</su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697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2. 공고기간 : 2017. 12. 11. ~ 2017. 12. 26.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위반건축물 위치	위반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반송주소	반송 사유
		구 조	용 도	면 적(m <sup>2</sup> )			
민○옥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9-8번지	조립식패널조	창고	15.5	금10,036,000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오두물길 2*-2*	이사 불명
김○섭		조립식패널조	의료시설 (병원)	67.1			
		파이프조	휴게실	6.0		인천 서구 면개포로 23, 1**호 (석남동,거북마을)	폐문 부재

### 6. 안내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구청 또는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 제기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청구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706호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매월 일요일(둘째, 넷째 주)에도 운영되어 수영강사의 지속적인 강습과 근무로 인한 피로도 증가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수영장의 격주 휴장으로 인한 수질관리 문제 및 공단 내 다른 수영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이용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 하게 이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명절(설·추석) 연휴』을 『일요일, 명절(설·추석) 연휴 휴관』으로 일부 개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0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3, 팩스032-560-27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매월 일요일(둘째, 넷째 주)에도 운영되어 수영강사의 지속적인 강습과 근무로 인한 피로도 증가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와 수영장의 격주 휴장으로 인한 수질관리 문제 및 공단 내 다른 수영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이용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중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명절(설·추석) 연휴』을 『일요일, 명절(설·추석) 연휴 휴관』으로 일부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매주 일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휴관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한다. 1. <u>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u> , 명절(설 · 추석) 연휴 2. · 3. (생   략)	제8조(휴관일) ----- -----. 1. <u>매주 일요일</u> ----- ----- 2. · 3.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707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숫자 나열식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행정동 명칭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명칭으로 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중 행정운영동의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란을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으로 일부 개정코자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숫자 나열식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행정동 명칭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명칭으로 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중 행정운영동의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란을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으로 일부 개정코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의 행정운영동란 중 “검단1동”을 “검단동”, “검단2동”을 “불로대곡동”, “검단3동”을 “원당동”, “검단4동”을 “당하동”, “검단5동”을 “오류왕길동”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4.11.19.]

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17-1708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숫자 나열식 「검단1동·2동·3동·4동·5동」명칭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명칭으로 개정하며,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전체 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코자 함. 또한 검단1동 청사 소재지를 신축 청사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여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및 제2조(소재지) 조문과 [별표] 중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를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로 개정함.
-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제2조 관련)」 개정 : <붙임> 참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512,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검단지역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에 따라 숫자나 열식 「검단1동·2동·3동·4동·5동」 명칭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명칭으로 개정하며,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전체 동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개정코자 함. 또한 검단1동 청사 소재지를 신축 청사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여 신뢰행정을 구현코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 개정 :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및 제2조(소재지) 조문과 [별표] 중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함.
-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제2조 관련)」 개정 : <붙임> 참조

###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6조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 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 회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회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회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경서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 [별표]

##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 회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회동)
청라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연회동)
청라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경서동)
청라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5(경서동)
가정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20(가정동)
가정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17(가정동)
가정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석남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 17(석남동)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 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 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 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 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 단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 당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 하 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오류동)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서구청, 동 주민센터</u> <u>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u> <u>조례</u>	<u>인천광역시 서구청 및</u> <u>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6조제1항에 따라</u> ---- ----- ----- <u>행정복지</u> <u>센터</u> ----- -----
제2조(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 <u>행정복</u> <u>지센터</u> -----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4조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 한다. <개정 2017.7.26.>

###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713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215호(2016.9.1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 주차장, 사업명: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3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 정서진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2,261㎡, 주차면수 80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2.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번	소재지	(가)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가정동	703-0	대	2,261	2,26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